

# 교육품질혁신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0.04.06. 개정 2022.04.04. 개정 2022.09.06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육품질혁신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인증 분석, 관리 및 성과 측정
- ② 4대 핵심역량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③ 삭제 <개정 2022.09.06.>
- ④ 교육품질 개발, 운영,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⑤ 삭제 <개정 2022.09.06.>
- ⑥ 삭제 <개정 2022.09.06.>
- ⑦ 학생역량관리에 대한 분석 및 개발, 개선에 관한 사항
- ⑧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용 실험실습재료 및 실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⑨ 기타 교육성과 평가인증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교직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04.04.>

## 제4조 (임기)

-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## 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## 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

석 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.  
<개정 2022.04.04.>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04.0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9.06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.